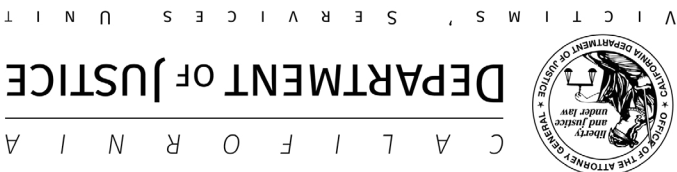


이름: _____	전화번호: _____
주소: _____	이메일: _____
직업: _____	언어: _____
주요 피해: _____	비밀번호: _____

캘리포니아주 법원 피해자 권리 센터

피해자 권리 센터

2008년 피해자 권리법



2008년 11월 4일에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은 발의안 9, 2008년 피해자 권리장전 법안: 마시의 법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법률은 피해자에게 추가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헌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카드에는 피해자 권리장전의 특정한 섹션과 관련 리소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무장관 산하 피해자 서비스 부서 (Attorney General's Victims' Services Unit) 전화번호 1-877-433-9069번으로 전화하거나 www.oag.ca.gov/victimservices/contact에서 웹사이트를 통해 연락하여 마시의 법 및 지역 피해자 증인 지원 센터 (Victim Witness Assistance Center)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헌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범죄 또는 비행 행위의 범행 또는 미수로 인하여 직접적이거나 위협적인 신체적, 정신적 또는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또한, '피해자'에는 해당인인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또는 보호자가 포함되며 사망했거나, 미성년자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범죄 피해자의 법적 대표가 포함됩니다. '피해자'라는 용어에는 범죄로 구금 중인 사람, 피고인 또는 법원이 미성년 피해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캘리포니아 헌법, 제1조, 제28(e)항)

주 전역 피해자 자원

성인 보호 서비스 (Adult Protective Services): 이 기관에서는 방임, 학대 또는 착취를 당하는 노인 및 부양이 필요한 성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대 또는 방임을 신고하거나 해당 카운티의 성인 보호 서비스에 연락하려면 1-833-401-0832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교정 및 재활부, 피해자 및 생존자의 권리 및 서비스 사무소 (CA Dep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 Office of Victim & Survivor Rights & Services, OVSRS): 이 기관에서는 가석방 심리, 가석방 조건, 구금 상태 변경 및 범죄자가 캘리포니아 교도소에 있을 때의 배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지원이 필요하다면 1-877-256-6877번으로 전화하거나 www.cdcr.ca.gov/victim_services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보상 프로그램 (Victim Compensation Program):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 위원회 (California Victim Compensation Board (CalVCB))는 최후의 수단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기관입니다.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CalVCB는 범죄로 인한 비용을 배상함으로써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CalVCB가 보장하는 범죄 및 적격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역 피해자 증인 센터 또는 CalVCB로 1-800-777-9229번으로 직접 문의하거나 www.victims.ca.go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피해자 자원 센터 (California Victims Resource Center): 피해자의 권리 정보, 해당 지역의 피해자를 위한 자원, 배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1-800-VICTIMS로 전화하거나 이메일(www.1800victims.org)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중계 서비스 (The California Relay Service): 이 기관에서는 언어 장애, 청각 장애 또는 난청이 있는 통화자를 위해 특별히 훈련된 의사소통 도우미를 제공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지원이 필요하다면 711번이나 1-800-735-292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피해자/증인 지원 센터 (Victim/Witness Assistance Centers): 해당 지역의 피해자/증인 지원 센터, 변호, 형사 사법 절차에 대한 정보 및 기타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법무장관 산하 피해자 서비스 부서 (Attorney General's Victims' Services Unit) (1-877-433-9069)로 문의하거나 www.oag.ca.gov/VictimServices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 기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Community Based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캘리포니아 형사법 조항 679.02 및 679.027에 따라, 피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책임, 치유 및 회복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피해를 입은 사람, 피해를 유발한 사람, 그들의 가족, 커뮤니티 회원 간의 만남을 주선하여 피해의 근본 원인과 영향을 조사하고 책임과 치유를 지원합니다. 회복적 사법 절차를 통해 유발된 피해를 깊이 이해하고, 책임에 대한 유의미한 표현, 피해를 회복하는 특정 조치에 대한 합의, 개인적 또는 커뮤니티 서비스, 고용이나 상담 참여, 회복 비용 지급 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해당 카운티의 커뮤니티 기반 또는 지역정부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법무장관 산하 피해자 서비스과에 전화 1-877-433-9069번으로 문의하거나 웹사이트 www.oag.ca.gov/VictimServices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단위의 피해자 자원

국립 범죄 피해자 센터 (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 1-202-467-8700 • victimssofcrime.org

피해자 권리장전(Victims' Bill of Rights)

캘리포니아 헌법, 제1조, 제28(b)항

피해자의 사법 및 적법 절차에 대한 권리를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1. 피해자의 프라이버시와 존엄성을 위해 공정과 존중으로 대접을 받으며 범죄 또는 소년형사사건 처벌차를 통해 위협, 괴롭힘,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2. 피고인 및 피고인을 대리하는 사람으로부터 합리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3.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안전이 피고의 보석금 액수 및 석방 조건을 정할 때 고려되도록 할 권리.
4.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을 찾거나 괴롭히는 데 사용되거나, 의학적 치료 또는 상담 치료 과정에서 이루어진 기밀 소통을 공개하거나, 기타 법률에 의한 기밀로 유지되는 것으로, 피고, 피고의 변호사 또는 기타 피고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기밀 정보나 기록이 공유되지 않도록 할 권리.
5.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또는 기타 피고인을 대리하는 사람에 의한 인터뷰, 녹취 또는 조사 요청을 거부할 권리, 및 피해자가 동의한 관련 인터뷰의 실행에 대해 합리적인 조건을 부가할 권리.
6. 검사에게 알려진 경우 피고인의 체포, 기소, 피고인을 인도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과 관련하여, 요청 시 합리적으로 통지를 받고 합리적으로 상의할 권리, 및 요청 시 사건에 대한 재판 전 처분이 이뤄지기 전에 통지를 받을 권리.
7. 피고인 및 검사가 참석할 수 있는 모든 공판 절차(비행 행위 절차 포함) 및 가석방이나 기타 형 확정 후 석방 절차에 대해, 요청 시 합리적인 통지를 받을 권리 및 그러한 모든 소송에 참석할 권리.
8. 체포 후 석방 결정, 항변, 유죄 선언, 형 확정 후 석방 결정 또는 피해자의 권리가 문제되는 모든 절차(비행 행위 절차 포함)에 대해, 요청 시 의견을 진술할 권리.
9.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고 사건 및 관련 판결 후 소송의 최종 결론을 즉시 받을 권리.

10. 피고인에 대한 선고 전에, 범죄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미친 영향 및 선고에 대한 의견을 선고 전 조사를 수행하는 보호관찰국 직원에게 제공할 권리.
11. 법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요청 시 선고 전 보고서를 받을 권리.
12. 피고인의 유죄 판결, 선고, 수감 장소 및 시간, 그 밖의 처분, 피고의 석방 예정일, 피고인의 석방이나 면책 사실을 요청 시 통지받을 권리.
13. 회복할 권리.
 - A. 캘리포니아 주민은 범죄의 결과로 손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겪은 손해를 야기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배상을 구하고 확보할 권리를 명백하게 가집니다.
 - B. 범죄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부과된 형벌이나 처분과 관계 없이 모든 사건에 대하여 범죄 사실이 확정된 사람에게 배상을 명령합니다.
 - C. 배상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모든 금전적 지급, 금전 및 재산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 명령을 받은 금액을 지급하는 데 먼저 적용됩니다.
14. 더 이상 증거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재산을 즉시 반환받을 권리.
15. 모든 가석방 절차를 통보받을 권리, 가석방 과정의 참여할 권리, 가석방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여 범죄자의 가석방 전에 고려받을 권리, 그리고 요청 시 범죄자의 가석방 또는 기타 석방을 통지받을 권리.
16. 가석방 또는 기타 판결 후 석방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일반 대중의 안전을 고려받을 권리.
17. (1)항부터 (16)항에 열거된 권리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

피해자, 피해자의 선임 변호사, 피해자의 법적 대리인 또는 피해자의 요청에 의한 검찰측 변호사는 사건을 관할하는 모든 재판 또는 항소 법원에서 위의 권리를 권리로써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요청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헌법, 제1조, 제28(c)(1)항)